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012.5.18.
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년 5월 8일 유동균의원 외 7명
- 나. 회부일자 : 2012년 5월 1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69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2년 5월 18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행정건설위원장 유동균 의원

가. 제안이유

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,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사항 마련 등 예산편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, 다른 위원회와 비교할 때 위원회 참석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(1) 안 제21조(재정 및 실무지원) 제3항을 신설하여 “구청장은 위원회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” 라고 규정함.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

동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6조에 위배됨이 없고 절차상으로도 저촉됨이 없으며 해당 기관인 집행부에 의견조회를 거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